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주민등록표(등·초본) 교부시 민원업무용 수입증지를 전자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설(안 제4조의 4)

- 주민등록표(등·초본)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수입증지를 날인하여 발급

나. “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” 을 “요금계기의 사용”으로 변경(안 제4조의 2)

다. “도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” 를 “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”로 변경(안 제4조의 2 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2(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),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2(관인영의 색깔) 및 제57조의2(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)

나. 도 자치행정과-25176(2010.12.09) 호에 따른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 통보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입법예고(2011. 06. 09 ~ 2011. 06. 30)결과 : 의견없음

5. 검토보고

○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가름합니다.

○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·구축하여 주민등록표(등·초본)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수입증지를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